의문사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활동기간 연장과 권한강화를 골자로 한 의문사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못함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실 규명 활동이 9월 16일로 끝나게 되었다. 위원회가 조사하던 85건 가운데 일부인 30건만이 진실의 일부를 드러냈을 뿐 아직도 대부분의 사건은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나지 않은 50여 건의 사건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지게 돼 영구미제로 남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과제 또한 영구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의문사위는 장준하 선생 및 최종길 교수의 타살 정황을 밝혀내는 등 여러 제약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두 차례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이 부진한 이유는 일부 공권력과 관련 책임자의 비협조와 방해, 그리고 이같은 행위가 용인되는 법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의문사법 개정은 조사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권한 강화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의문사는 독재가 횡행하던 시절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건이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다시 한번 죽음의 고통속으로 몰아넣는 일이며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국민 모두에게 수치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분투해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관련 단체에 경의를 표하며, 하루속히 의문사법을 개정하여 진실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9. 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